

HCN 방송 윤리 강령

※ 우리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조직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다.

※ 우리는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편향된 보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기자의 신분을 내세워 부당한 이권 개입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취재원이 제공하는 특혜나 사적 편의도 받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득하지 않으며 특정 방향의 보도를 위해 기사에 반영되는 기록과 자료 등을 조작하지 않는다.

※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득한 정보를 사적 용도로 악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취재원을 보호하며 개인의 명예를 해칠 수 있는 불명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론권을 제공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 우리는 지역사회에 갈등이나 차별을 유발하는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회사 수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나 영업행위를 위한 보도를 절대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법, 위법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기자로서 품위를 유지한다.

HCN 방송 윤리강령 시행 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HCN 취재윤리강령 시행 준칙은 취재 및 방송제작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 청렴함과 공정 보도를 위한 구체적 이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재윤리강령 준수 의무)

- (1) HCN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2)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청렴서약서 또는 윤리강령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조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위한 조치)

- (1)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보도는 하지 않는다.
- (2) 기자의 신분을 내세운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확인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진위를 파악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조 (정보유출금지)

HC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제3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HCN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와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HCN 임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속 상급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혜의 배제) HCN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HCN 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1)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외부인사 또는 출입처 등 외부기관에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1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와 직위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2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직원으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전, 선물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사회의 보편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편의(항공 제외)와 간소한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등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3조 (금품 등 제공 금지)

HCN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등에게 금전, 선물,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사회적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4장 위반 시 조치

제1조 (위반 시 신고)

(1) HCN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인사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1)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혹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지원부서 등에 전달하여 폐기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기부하기 부적절한 물품은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전달할 수 있다.

제5장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조 HCN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임원급으로 구성한다.

제2조 (위반 행위의 조사)

(1) 위원회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당사자 또는 제 3자의 진술을 듣거나 회사의 관련 부서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제3자 또는 부서 책임자에 대해 징계인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의결)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비밀엄수 의무) 이 규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